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. 5. 3 선고 2022가단112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 고 1. A

소송대리인 B

2.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3. 4. 5.

판 결 선 고 2023. 5. 3.

주 문

1.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1. 1. 1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1. 1. 20. 접수 제2458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

1) 원고는 F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아래 표1. 보증내역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’이라 한다)을 체결한 후 이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E은 그 무렵 위 각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 또는 G은행에 제공하고 아래 표2.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위 각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.

순 번	보증번호	보증금액	보증일	보증기한	대출과목	보증상대처
1	H	300,000,000	2016. 2. 26.	2021. 2. 19.	중소기업 자금대출	기업은행 거제동지점
2	I	285,000,000	2018. 6. 28.	2021. 6. 25.	일반 자금대출	G은행 장평동지점
3	J	300,000,000	2020. 7. 30.	2023. 7. 28.	일반 자금대출	G은행 장평동지점
4	K	190,000,000	2020. 7. 30.	2023. 7. 28.	일반 자금대출	G은행 장평동지점

순번	보증번호	보증금액	대출기관(취급점)	대출일자	대출금액
1	H	300,000,000	기업은행 거제동지점	2016. 2. 29.	300,000,000
2	I	285,000,000	G은행 장평동지점	2018. 7. 2.	300,000,000
3	J	300,000,000	G은행 장평동지점	2020. 7. 31.	300,000,000
4	K	190,000,000	G은행 장평동지점	2020. 7. 31.	200,000,000

2) E은 2020. 12. 29.경부터 위 각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기 시작하였고, 원고는 기업은행 및 G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1. 6. 22.과 2021. 6. 25. 아래 표3. 대위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과 G은행에 합계 980,019,32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.

순번	보증번호	대위변제일자	원 금	이 자	구상합계액
1	H	2021. 6. 25.	270,000,000	4,118,463	274,118,463
2	I	2021. 6. 22.	211,522,098	2,745,412	214,267,510
3	J	2021. 6. 22.	300,000,000	-	300,000,000
4	K	2021. 6. 22.	190,000,000	1,633,351	191,633,351
합계			971,522,098	8,497,226	980,019,324

3) 원고는 2021.경 창원지방법원 2021차전4431호로 E을 상대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2021. 7. 7. 위 법원으로부터 대위변제금 등 합계 984,526,538원 및 그 중 980,019,3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1. 7. 28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

E은 2021. 1. 15.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거제시 L 답 562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1/3 지분을 매매대금 40,200,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1. 1. 20. 접수 제2458호로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지분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

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, 피고들은 원고가 2021. 2. 8. 거제시 M 답 1223㎡ 중 E 소유의 1/3 지분 등에 가압류를 한 때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,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. 2. 17.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E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가압류 신청 또는 집행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거나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E은 2020. 12. 29.경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21. 6.경 기업은행과 G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, 원고의 E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

있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갑 제6, 11, 1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거제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E은 약 890,000,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, 소극재산이 약 2,500,000,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이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E이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들의 선의 항변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피고들의 배우자들이 E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한 후 그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황에서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일 뿐 피고들이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해의사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현범

별지

목 록

1. 경남 거제시

답 562㎡

중 공유자 지분 6분의 1

공유자 지분 6분의 1

-이상-

